건축기사시리즈 건축법규 2차 정오표 [2017.3.22] [17.2.4 개정법령 반영]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청색 글씨-수정된 부분)

5페이지
(표)

5.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² 이상인 건축물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② 종교시설 **삭제** ③ 판매시설 ④ 여객용시설 ⑤ 종합병원 ⑥ 관광숙박시설

※ 교재내용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

69페이지
(표)

용 도	세 분	내 용	기 타
1. 단독주택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 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포함)	① 단독주택	-	-
	②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330m²이하, 3개층 이하인 것**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닐 것
	③ 다가구 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 •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부설주차장 바닥면적 제외)이하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④ 공관	-	-

70페이지
(표)

주택을 포함하며,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③ 다세대 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²이하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④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이상인 것	-

건축사기사시리즈 건축법규 1차 정오표 [2017.2.22] [17.2.4 개정법령 반영]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파랑색 글씨-수정된 부분)
45페이지 본문내용 추가	<table><tr><td></td><td></td><td></td><td>예 외</td></tr><tr><td></td><td></td><td></td><td>• 지방건축위 심의를 거친 건축물 (초고층건축물 제외)</td></tr></table>
49페이지 【4】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①~⑦ 내용 교체	【4】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1. 초고층 건축물 2. 건축물 한 동의 연면적이 10만m² 이상인 건축물 (2) 안전영향평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고시한다. (3) 안전영향평가 절차 ① 건축주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서, 기본설계도서 등 시행규칙 〈별표3〉의 도서 2. 인접대지에 설치된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토요일은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⑦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안전영향평가 항목 ①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②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③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④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4) 비용의 부담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53페이지 본문내용 수정 및 삭제	(3) 건축신고의 취소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은 취소된다.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3】 제한방법 ~~비고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착공을 제한한 날부터 2년~~ 삭제함.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정 오 표 (파랑색 글씨-수정된 부분)</th></tr>
<tr><td>70페이지
표내용 수정 및 추가</td><td>
<table>
<tr><td rowspan="3">3. 제1종
근린생활
시설</td><td>④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안마원·산후조리원</td><td></td></tr>
<tr><td>⑥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td><td></td></tr>
<tr><td>⑩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등</td><td>바닥면적 합계 30㎡ 미만인 것</td></tr>
</table>
</td></tr>
<tr><td>78페이지
표내용 수정</td><td>(6) 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table>
<tr><th>보전녹지지역</th><th>생산녹지지역</th><th>자연녹지지역</th></tr>
<tr><td>다. 교정 및 군사시설</td><td>차. 교정 및 군사시설</td><td>타. 교정 및 군사시설</td></tr>
</table>
</td></tr>
<tr><td>102페이지
본문내용 추가</td><td>【1】 성실시공의무 등
⑤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의 공정이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시기에 다다른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td></tr>
<tr><td>109페이지
표내용 수정</td><td>(1) 업무정지
① 1년 이내의 업무정지
<table>
<tr><th>대상 건축물</th><th></th><th></th></tr>
<tr><td>•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td><td></td><td></td></tr>
</table>
②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
<table>
<tr><th>대상 건축물</th><th colspan="2">위반사항</th></tr>
<tr><td>•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td><td></td><td>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1억원 이상으로서 도급금액의 10% 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td></tr>
</table>
</td></tr>
<tr><td>133페이지
1번문제 해설</td><td>•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적용법령은 건축법 4장, 5장, 6장, 7장의 내용으로 한다.</td></tr>
<tr><td>176페이지
표내용 수정</td><td>
<table>
<tr><th>구 분</th><th>구조계산을 요하는 건축물</th></tr>
<tr><td>2. 층수</td><td>2층 이상(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td></tr>
</table>
</td></tr>
<tr><td>184페이지
1번문제 보기와 해설</td><td>① 층수 : 2층 이상
해설
<table>
<tr><th>구 분</th><th>구조계산을 요하는 건축물</th></tr>
<tr><td>2. 층수</td><td>2층 이상</td></tr>
</table>
</td></tr>
<tr><td>185페이지
8번문제 보기와 해설</td><td>③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해설: 지진에 대한 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 2층 이상 건축물</td></tr>
</table>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파랑색 글씨-수정된 부분)
185페이지 9번문제 보기와 해설	① 6층 이상인 건축물 해설: 2층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
193페이지 1번문제 보기와 해설	①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해설: ① 층수 2층 이상
260페이지 본문표 수정	③ 창고의 내민구조로 ~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6m 후퇴한 선으로 구획된 면적
262페이지 본문내용 수정 학습POINT 추가	(2)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 ⑥ 〈삭제〉 ⑥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4】 연면적 (2) 용적률 산정시의 연면적 기준 지하층의 면적·주차장(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 면적, 고층 건축물, 준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장애인용 승강기, 경사로 등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5.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바닥면적
287페이지 그림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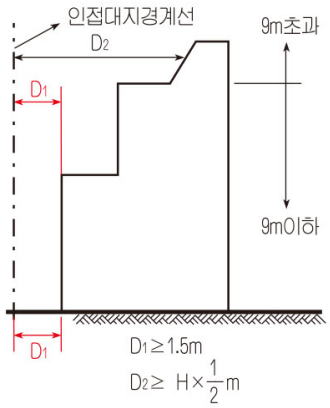
365페이지 본문표 수정	(1) 심의사항 지방건축위원회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73페이지 5번문제 해설	③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④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74페이지 6번문제	③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해설: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